

설계공모 제도의 이해

2021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들어가며_개인소개

설계공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설계공모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진행하여 봤음

연구의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건축사의 입장보다는 공공기관의 기획자 입장에 더 가까움

*국립박물관단지 국제공모(2016),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공모(2020),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모니터링,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설계공모 대행 등의 업무를 진행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2017)*

알고 있는 범위는 건축기획에서 심사까지이며,
심사 이후의 사업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 못함

전체 건축 조성과정을
사업기획 - 건축기획 - 건축설계(기본, 중간 등) - 건축시공 - 건축운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본설계 전 단계까지만을 알고 있음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표된 내용만 바탕으로 함
따라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야 할 부분임

들어가며

앞선 강의에서는
공공건축의 의미, 건축기획에 대해서 살펴본 것

이후로 기획의 실행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

발주의 하나의 방식인 설계공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본 강의는 발주자,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설계공모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에서 최근 개정 사항까지를 다루고자 함

- (사전적 정의) 발주. 주문을 하다 - 수주. 주문을 받다.

설계공모 이외에 발주방식은?

- 가격입찰, PQ(자격심사) 등

들어가며

Q) 설계경기, 현상설계, 설계공모?

- 2014.6.1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 + “설계의 질을 높임”

+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

* 아마도 건설(기술관리)과 건축은 다르다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구분하고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

> 그러나 이전부터 존재하던 설계공모 운영 지침이 존재하였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이 존재하고

그 이전에 설계경기규준 및 UIA설계경기규준이 존재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2005 제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1998.2.19,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호) 폐지

*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

* UIA국제설계지침 UIA Guide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2017)

* **설계경기** : 성인수(1994), 건축행사 - 설계경기,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350-387

- 현상설계는 ‘건축법시행령’ 상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에서 표현이 일부 남아 있음



들어가며

Q) 왜 설계공모 이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가?

설계공모를 내는 시점과 관련한 문제로

사업비, 공사비가 확보되지도 않았음에도
향후 사업을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설계안을 받는 다는 것에서
설계안을 받는 경우도 있음

사업실행을 위한 변수를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거나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여서
사업이 변경,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

* 광화문 '의정부 옛터' 역사문화공간 계획 취소

- 서울시 사업 추진, 설계공모(202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립계획 부결, 시의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중단

남은시간 |

개요	일정
포상금	대상지
심사위원	공지사항
질의응답	다운로드

진행중인 공모전

-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설계용역 일반 설계공모 [공모예정](#)
- 아이누리 어린이집 신축 설계공모 [접수마감](#) 2021-10-28
- 양명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설계공모 [접수마감](#) 2021-10-20
-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접수마감](#) 2021-10-19
- 하계5단지 공공주택 국제설계공모(1단계) [접수마감](#) 2021-09-09
- 위례선 트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접수마감](#) 2021-09-09
- 리엔업 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 [접수마감](#) 2021-09-09
-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 설계공모 [접수마감](#) 2021-08-30

COMPETITIONS

Home / COMPETITIONS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2단계

[주소복사](#) [목록으로](#)

358,077 m²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 | 참가등록 11 명 | 작품접수 7 명 [공유하기](#)

개요



공모 제목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2단계
공모 범위	<p>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p> <p>부지면적 358,077 m²</p> <p>설계범위 • 설계범위는 잠실 5단지 재건축 부지에서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에 접한 대지로 한정한다. • 설계범위 구분은 공공영역, 민간영역과 토지이용 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 프로그램 배치는 A블록, B블록으로 구분된다. - A블록 : 한강보행교, 공원A+문화시설(도서관), 아파트 및 부대시설 - B블록 : 복합주거지역(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호텔 및 컨벤션, 문화시설, 우체국, 파출소, 주민센터, 종교시설, 공원B, 공개공지</p>
예정 설계비	3,000 (부가세 포함) 백만원
공모 운영	공모관리 -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인석 교수 - (주)커브 (thiskerb@gmail.com) * 우편물 접수처 우04524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공간개신단, 담당자 김도형(02-2133-7623)
지명 건축가	<p>조성룡 (ubac/조성룡도시건축)</p> <p>장윤규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p> <p>Frits van Dongen (van Dongen - Koschuch Architects and Planners)</p> <p>Christian de Portzamparc (2PORTZAMPARC)</p> <p>고대근 (가이건축사사무소) : 공동응모: 윤승현(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최문규(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허대영(조경설계 팀)</p> <p>이종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응모: 정승권(범도시건축사사무소)</p> <p>맹필수 (MMK+) : 공동응모: 김지훈(MMK+), 이은경(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최재원, 오진국, 신요한(폴로 건축사사무소), 차태욱(Supermass Studio)</p>

들어가며

공모라는 개념에서는
주로 마케팅의 업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최고작품을 뽑는 것?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들어가며

Q) 저는 설계공모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담당자가 되었는데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운영 가이드라인 자료가 발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auri.re.kr/pdf/20190225/npbc_p_2018.pdf (2019.2.13)
<https://project.seoul.go.kr/downloadFile.do?fileSeq=57572> (2021.2.2)

들어가며

Q) 저는 설계공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운영 가이드라인 자료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NPBC).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주요일정 및 문의' (Main Schedule and Inquiries), '업무안내' (Business Guide), '뉴스/소식' (News/News), and '발간물' (Publications). The page title is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Inquiries (FAQ)).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with '주요일정 및 문의' (Main Schedule and Inquiries) selected, and other items like '주요일정' (Main Schedule) and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Inquiries (FAQ)).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and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건축기획', '사업계획서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Design Competition), and '기타' (Others). The '설계공모' section is active.

The '설계공모' section has a sub-navigation bar with '공모 대상' (Competition Target), '공모 운영방법' (Competition Operation Method), '설계발주 방식' (Design Issuance Method), and '공모 심사' (Competition Review). The '설계발주 방식' section is active.

The content lists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design competition methods:

- Q**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 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②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Q**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해야하나요?
A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의무 적용하는 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공모, 입찰,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모든 발주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사업을 설계공모 적용 시에는 공모 참여율, 효율성(공모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출물의 양을 간소화한 일반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의 활용 등을 권장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earch bar with a dropdown menu set to '-전체-' and a '검색' (Search) button.

The footer includes '관련사이트' (Related Sites) with logos for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AURIC'. Below this is a row of logos for '메인페이지' (Main Page), '사이트맵' (Site Map), '건축공간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Urban and Environmental Policy),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National Center for Urban Policy Information),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National Center for Construction Regulation Monitoring), and '도시공간계획조정센터' (National Center for Urban Planning and Adjustment).

Q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 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②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Q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해야하나요?

A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의무 적용하는 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공모, 입찰,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모든 발주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사업을 설계공모 적용 시에는 공모 참여율, 효율성(공모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출물의 양을 간소화한 일반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의 활용 등을 권장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기타
------	------------	---------	------	----

공모 대상	공모 운영방법	설계발주 방식	공모 심사
-------	---------	---------	-------

Q 설계공모를 대행의뢰 할 수 있나요?

A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운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Q 설계공모 시 공모보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는 설계공모비용의 보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제안공모는 공모 기간이 짧고 제출물이 간소하기 때문에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운영비(심사비, 일비, 경비 등), 현장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Q 설계공모 시 제출도서의 범위(종류 및 규격)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일반설계공모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제출도서 등)에 따라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설계도판, 조감도 등 제출물 요구 수준이 높을 경우 입상작 보상비를 제21조에서 제시한 최대 보상비용 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합니다.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2019.3.22.)준용)

건축기획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기타
------	------------	--------	-------------	----

공모 대상	공모 운영방법	설계발주 방식	공모 심사
-------	---------	----------------	-------

Q 설계발주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A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2단계설계공모, 제안공모 중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를 적용합니다.

Q 리모델링(또는 대수선) 사업도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리모델링 및 대수선 사업도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을 설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설계발주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A ① 설계비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한 경우, PQ로 진행 가능
 ② 설계비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서 PQ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견을 득하고 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모 대상	공모 운영방법	설계발주 방식	공모 심사
-------	---------	---------	-------

Q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① 심사위원 자격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발주기관 내 심사위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외부인원으로만 위원 구성 가능함

③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Q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의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당선작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당선작의 설계변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 당선작에 대한 과도한 변경은 수의계약의 우선협상권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계약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당선작 외 입상작의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입상작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준용을 권고

※ 제안공모의 경우는 완성된 설계안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또는 전문가)을 추천해주세요.

A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심사위원(전문가)을 추천·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심사란?

누가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가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 전제에 앞서는 것은 설계도면으로 설계안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심사위원의 구성

- 지역과 타지역/ 공무원과 교수/ 설계경험이 있는 교수와 없는 교수

토론식 심사를 위해서는 토론 참여자들간의 상호배려가 필요하고

토론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고 설명 등의 과정이 필요함

- 00지자체 아이디어 공모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건축사 참여
- 심사 이전에 의견은 반영하되 심사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음
-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만큼의 고민이 있는가라는 참여자들의 질문도 지속적으로 존재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

설계공모 관련 법, 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공모 관련 법, 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자원순환관련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8. 장례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설계공모 관련 법, 제도

공모방식의 적용대상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1항 적용대상

2항 (공모방식 제외 시 심의) 1항에 건축물이 사전검토에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단, 설계비 5억 미만이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항 (공모대상 타 사업에 포함 금지)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건축물 설계를 다른 공사 설계에 포함해서 다른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

4항 (설계공모 업무 전문기관 의뢰) 설계공모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5항 (전문기관 미의뢰시 심사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6항 (공모보상) 공모에 참여한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에 공모비용 일부 보상

-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 최대 1억 범위 내에서 설계비의 10%를 원칙

(필요시 초과 지급 가능)

7항 (공모공고) 공모방식 발주 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시행공고, 심사결과 공개. 단, 심사결과는 7일 이내

들어가며,
설계공모, 왜 하는가?

설계공모, 왜 하는가?

발주와 설계공모

- 발주 방식 중 하나로 설계공모 방식

(사전적 정의)

발주(發注). 주문을 하다.

- 수주(受注). 주문을 받다.

설계공모 이외에 발주방식은?

- 가격입찰, PQ(자격심사) 등

설계공모, 왜 하는가?

외국에서는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혁신을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설계공모는 사회적인 담론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냥 1억 이상으로 의무화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의무화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경쟁자 중 하나를 선정하는 방식인가?

그리고 계약은 하되 실행이 되지 않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안목까지도 요구하는가?

설계공모, 왜 하는가?

건축만 진행하는 독특한 조달방식?

계약법상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제안서를 투찰하여서 경쟁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다만, 잘 모르는 발주기관에 참여가 쉽지 않음

- 발주처 : 지방까지 잘 오지 않는다.
- 건축사 : 공정하지 않다.

경쟁률을 보면서 가능성 있는 일에 한정된 일을 쏟겠다.
그래서 일단 참가신청 해보고 경쟁률이 어느정도 인지 보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해본다.

설계공모, 왜 하는가?

발주라는 개념에서는

파트너, 팀을 정하는 것

사업을 기획한 사람 : 발주처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 발주처

도움을 주는 사람 : 설계자

설계공모, 왜 하는가?

건축사 분들은

생존, 생계를 위한 수주라는 입장 외에도
설계공모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2021.6.21/ 8.1 시행)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 · 결과 투명성 제고
(안 제11조-제14조)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편
(안 제20조, 제26조, 제34조 등)

간이공모 신설
(안 제2조, 제5장 간이공모(안 제36조-제40조) 등)

그 외(제한 · 지명공모 심의개선(안 제4조),
비대면 등록 권장(안 제6조, 제9조) 등)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2021.6.21/ 8.1 시행)

제개정 이유

14.6부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 운영 중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 절차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 · 결과 투명성 제고(안 제11조-제14조)

나.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편(안 제20조, 제26조, 제34조 등)

다. 간이공모 신설(안 제2조, 제5장 간이공모(안 제36조-제40조) 등)

라. 그 외

(제한 · 지명공모 심의개선(안 제4조),
비대면 등록 권장(안 제6조, 제9조) 등)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위원 선정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기존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신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위원 선정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신설

⑧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지침(안)
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위원 선정

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등

기존

⑥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수정 및 신설

⑦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과정

제13조 심사위원 개최

기존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수정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과정



<https://www.youtube.com/watch?v=SXuvjn6QG6E>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과정

(생각해볼 문제)

공개를 통해서 경쟁사가 사전에 심사위원의 질의 정보를 획득하여서 대응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

- 사전에 질문 사항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 존재하여서 대기실에서는 외부자와 연락을 제한하는 방식 등 진행하기도 함
- 발표가 끝난 팀은 이후에 발표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함

설계공모가 수주를 위한 경쟁이기도 하지만,
다른 팀은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다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상황임

또한, 현재의 공개방식은 YOUTUBE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심사 이후에는 비공개하고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사업의 특성 및 공공건축물의 수혜 대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제14조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기존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수정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다.

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
3.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4. 입상작의 이미지
5. 그 밖에 발주기관등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서울터
건축행정시스템

민원서비스 정보 알림 이용안내

공지 다시보기 3

회원가입 로그인 My

목록메뉴

지자체 장애현황

민원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지역명과 신청할 민원명을 입력하세요 **민원신청**

검색예시 마포구 사용승인, 미추홀구 관계자, 수원시 사무소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고**
-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허가** **신고**
-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허가** **신고**
- 관계자 변경신고 **허가**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 **연장**
- 전체민원 보기

01 민원신청

- 건축물대장
- 협약·공모 외
- 이용현황 서비스
- 공공건축 설계공모**

자주 찾는 민원 나의 민원현황

서울터 콜센터 02-3480-0200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자주 찾는 민원 이동하기

관계자 전자서명

원격지원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진행중 공모 |
 완료 공모(Archiving) |
 공모 관련 사이트

공모전지역 ▼ 공모전방식 ▼ 공고기관유형 ▼ 건축물 용도 ▼ 공모전 규모 ▼ 예정설계비 ▼ 건축행위 ▼
 공고연도 ▼ 입력검색유형 ▼ 공고기관명,심사위원명,참여업체명(입상작 설계사),공모전명 검색

참가 등록 중 공모 17개	작품 접수 중 공모 89개	심사결과 미등록 공모 374개	심사결과 등록 공모 273개
완도군 신구항 어촌뉴딜 선... D-5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 D-4	원당초 소규모체육관 증축공사 설...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
순창읍 도시재생 어울림센... D-5	도장포항 어촌뉴딜사업 건... D-5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공사
해남군 남성항 어촌뉴딜사... D-5	직산도서관 건립공사 설계... D-5	교육 1,2,3호관 개축 설계공모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건축...
보령시 고대도항 어촌뉴딜... D-5	동대문구 구립 어르신종합... D-6	치의학대학원 본관동 증축 공사 설...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 건축설...
함양울산선 밀양(울산방향)... D-5	하계5단지 공공주택 국제설... D-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청...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기...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로그인 | 회원가입 | 내 프로젝트 | 즐겨찾기 English

PROJECT **SEOUL** About Us Competitions Archiving News f rss

Home / Archiving

ARCHIVING

공모전 유형	공모전 규모	공모전 지역	참가 자격	공모전 연도
진행단계	공모전 정렬	당선 업체명을 입력하세요	공모전명을 입력하세요	Q 검색

<p>중구 인쇄 스마트엔지니어링 설계공모 에이아이엠건축사사무소</p>	<p>'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칭)' 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 설계공모 (주)더하다건축사사무소</p>	<p>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엔지니어링 설계공모 아키드건축</p>	<p>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설계공모 (주)본종합건축사사무소</p>
<p>에이아이엠건축사사무소</p>	<p>아키드건축</p>	<p>아키드건축</p>	<p>(주)본종합건축사사무소</p>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공연안내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공간 소개 정보공개 정동극장 소개

국립정동극장

JEONGDONG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1:1 문의

제휴 안내

클린신고 센터

자주찾는 메뉴

예매하기

오시는길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정동극장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67호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외 1필지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혁신
보따리온 정부

국민의 나라
경제로 대장민국



국가상징
알아보기

English

누리집안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정보공개

참여·민원

알림·소식

정책자료

행복도시

기관소개

추진위원회

전체목록 ^

알림·소식

진행완료 공모

홈 > 알림·소식 > 설계공모 > 진행완료 공모

알립니다

발주정보

설계공모

진행중인 공모

진행완료 공모

인사발령

보도자료

주요정책홍보

정책소식지

페이지: 1/15

제목

검색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67021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1-05-27	348
66981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작품접수 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1-05-12	216
66942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예산 변경 공지	공공시설건축과	2021-04-19	85
66880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질의회신	공공시설건축과	2021-03-25	107
66858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1-03-16	180
66850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 및 기술위원 공지	공공시설건축과	2021-03-10	221
66837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공고	공공시설건축과	2021-03-04	406
66639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0-12-10	770
66638	평생교육원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0-12-10	364
66606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공시설건축과	2020-11-30	563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생각해볼 문제)

평가사유서 작성 대상

- 모든 작품에 부족한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제출자에 대한 발주처의 최소한의 사항이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음
- 다만, 수십작품이 접수되는 경우, 심사에 있어서 1차에서 투표를 통해서 절반 정도를 떨어트리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작성에는 제한이 있음
- 최소 입상작에 한정해서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의견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개진 등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
- 영미권에서 honorable mention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심사결과 투명성 제고

(생각해볼 문제)

심사위원의 공개

- 심사위원을 참고하여서 설계공모의 응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
- 프로젝트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불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참여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존재
- 심사위원을 다수로 설정하여서 참여자가 작품 제출 시 선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당선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 현행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도 심사위원은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20조 평가

기존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수정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20조 평가

기존

-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

-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26조 1차 공모의 평가

기존

-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수정

-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인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26조 1차 공모의 평가

기존

-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수정

-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34조 평가/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기존

-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평가방식 개편

제34조 평가

수정

-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사항과 제안요청과제의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간이공모 신설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제5장 간이공모 운영방법

36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8조(제출도서 등)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혹은 **A4용지 8매 이내**로 한다.

제39조(평가) 간이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간이공모 신설

(생각해볼 문제)

취지

- 다양한 발주처의 상황에 맞게 발주방식을 다양화하여서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는 상황임
- 제출물 간소화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낭비요소를 줄이고 더 좋은 설계안 작성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반공모 VS 제안공모

- 일반공모와 제안공모를 구분하는 방식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인가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임
-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제안공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의 접근방식이나 그동안 진행한 경험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유의할 점은, 제안공모는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화될 수 있으나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발주처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최근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그 외(제한·지명공모 심의개선)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기존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수정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설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
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그 외(비대면 등록 권장)

제6조 등록

신설

- ② 발주기관등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모안의 제출

신설

-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발주기관등은 **디지털 심사방법에 의한 공모안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0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_비대면 등록

(생각해볼 문제)

기존에는 등록 및 현장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여서
행정부문에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였음

과도기적인 차원으로 접수와 관련하여서 별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공모 지침서 상에 관행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행정서류들에 대한 간소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작품제출서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현장설명회가 대지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도 현장을 꼭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나, 국제공모 등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공하는 자료로 충분히 대지의 특수성이나 상황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심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발주처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세움터 시스템을 확대하여 현재 공모 공고 및 심사결과 공지 외에도
발주처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